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6. 23 선고 2021가단10513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6. 2.

판 결 선 고 2021. 6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,171,763원 및 그중 531,025원에 대하여 2020. 11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.7%의, 1,000,000원에 대하여 2020. 11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.76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가. 피고는 2003. 12. 24. 주식회사 C(이하 'C카드'라고 한다)와 사이에 신용카드사용약정을 체결하고 C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등의 구입 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반자금을 대출받았다.

나. C카드는 2018. 11. 14. D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, D 주식회사는 2019. 12. 13.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.

다. 2020. 11. 24.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미지급 신용카드대금 및 일반자금대출금은 총합계 3,171,763원[= 신용카드사용 원리금 1,107,051원9= 원금 잔액 531,025원 + 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 576,026원) + 일반자금 대출원리금 합계 2,064,712원(= 원금 1,000,000원 + 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 1,064,712)]이고, 그중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2020. 11. 25. 이후의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23.7%이고, 일반자금 대출에 관한 2020. 11. 25. 이후의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20.76%이다.

2. 판 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,171,763원 및 그중 신용카드 사용 원금 잔액 531,025원에 대하여는 2020. 11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.7%의, 일반자금 대출원금 1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0. 11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.76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이순형